

의안번호	2213078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6. 5. 6.
추 계 번호	25B5155

식량안보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억 5,600만원(연평균 5,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식량안보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100	—	—	—	—	100	20
식량안보위원회 설치(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조)	31	31	31	31	31	156	31
합계	131	31	31	31	31	256	51

주: 1.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방법·규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식량안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고 농수산물의 생산 증대, 안정적인 생산·유통과 품질 좋은 식량의 공급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실시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식량 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식량안보 강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식량안보 보장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외 식량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식량안보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6항)	
2	안 제7조(식량안보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식량안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식량안보위원회 설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량안보 강화 방안 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시행계획에는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및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식량안보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3항)	
6	안 제11조(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쌀,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식량 및 주요 농산물의 적정 재배면적과 생산량, 비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자급목표 달성과 유지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주요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 안정화 지원, 직불금 지급 등 농가소득 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2조(농지 보전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하여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적정 농지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 농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농지 정책에 따라 국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량작물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제4항)	
		국가는 주산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보상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제5항)	
		국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8	안 제13조(농업 용수 및 수리시 설 관리)	국가는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용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기 위한 수리시설 관계망의 구축 및 현대화 사업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업용수 이용 체계 구축 및 수자원 이용 효율 극대화 사업	
		3. 농업용수 공급 체계의 정보화 추진 및 과학적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4. 토양 유실, 오염 및 과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사업	
9	안 제14조(종자 산업 보호 및 육 성)	국가는 종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하여 종자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종자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식량자원의 다양성 보존 및 이용과 종자의 품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종자 자원 저장고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종자의 품종 개량 및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종자 자원 보호 및 관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종자 공급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제3항)	
		국가는 종자 육성 기술의 기초 연구 및 첨단화 사업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을 갖춘 우수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제4항)	
		국가는 재난 발생 등 비상시에도 식량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종자 비축 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제5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5조(농업 투입재 공급 및 기계화 지원)	국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농약·비료·사료 등 농업 투입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 작업의 기계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농업 투입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 투입재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농기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스마트 농업 기술 및 기계화 보급을 통해 농업생산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국가는 농업인력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16조(농어업경영체 경영안정 및 육성 지원)	국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1. 자연재해, 시장 가격 변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영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 보험, 손실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 및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연구 개발 지원 3. 농어업생산 및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4. 안정적인 농어업 소득 보장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수급 조절 및 유통 개선 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국가는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 교육 및 훈련, 금융 지원, 영농·어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2	안 제17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국가는 식량안보 강화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 체계 및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농수산물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 생산자와 판매자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전국 식량 수급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요·공급의 총량이 균형을 이루고 주요 식량 가격이 안정되도록 거시적인 관점의 시장관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8조(식량비축시스템 구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식량 공급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량비축, 물류,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수입·수출 조정, 방출·비축 조정, 생산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국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식량 및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락하는 경우 비축식량 방출, 수입·수출 조정,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 식량안보 강화를 위하여 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농산물 비축과 유통 효율화,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위기 시 식량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비축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식량 비축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공비축양곡(「양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비축을 말한다)을 비축·운용하는 경우, 모든 국민이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을 비축하여야 함. 이 경우 비축하는 곡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식량비축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량비축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량가공 및 유통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하여 자율적인 식량 비축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세제·시설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정부와 식량비축관리기관은 비축식량의 수매·보관·이동·방출 등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실시간으로 취득·처리·전송·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제8항)	의무규정
		정부는 식량안보위기에 대비하여 수입한 식량을 하역·비축·가공·유통하기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0항)	재량규정
		정부는 해외에 위치한 곡물 엘리베이터(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19조(식품 산업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식품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식품사업자”라 한다)가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비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정부는 식량 및 주요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고품질 가공식품 생산 등 식품가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원조개발사업 등에 해외농업협력을 통한 식품사업자의 식품원료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테크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15	안 제20조(식량 증산 시책)	정부는 국내 식량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정부는 미곡(米穀), 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 등 주요 곡물의 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에 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정부는 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6	안 제21조(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화 체계 구축)	국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진흥과 농어업기술의 농가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2항) 1. 식량 생산·비축·유통·가공 등 전 과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 및 핵심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농업 등을 위한 첨단 기술과 설비의 도입,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지원 3. 친환경 농어업 확산 및 지속가능한 농법 개발 4. 농어업 관련 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및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6. 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2조(농어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어업생산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 지원, 재해 모니터링 강화, 재해예보 시스템 고도화 등 농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18	안 제23조(식량안보 통계 시스템 구축)	국가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량안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식량안보와 식량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통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재량규정
19	안 제25조(식량위기경보 및 대응 체계)	국가는 국내외 식량 수급 상황 및 가격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식량위기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을 포함한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식량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약화가 우려될 경우,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식량안보 강화 방안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보 단계에 따라 대응 체계와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 식량 수급 동향, 국제 곡물 가격 변동, 기후변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식량안보위기 예상 시 식량위기경보를 즉시 발령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제4항) 식량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수립된 대응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제5항)	
20	안 제26조(식량안보위기대응기금 조성)	국가는 식량안보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안보위기 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함(제2항) 1. 식량 비축·방출 및 수입 조정 등 시장 안정화 사업 2. 식량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수급 조치 3. 식량 생산 기반 유지, 보수 및 복구 지원 4. 식량 수급 조사·분석, 위기 대응 관련 연구 5. 그 밖에 식량안보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3항) 1. 정부의 출연금 2. 민간 또는 국제기구의 출연금·기부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21	안 제27조(식량안보위기 대책본부 설립 및 운영)	국가는 식량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식량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2	안 제28조(식량안보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식량안보위기대응 매뉴얼(이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3	안 제29조(식량관리체계 구축)	국가는 식량안보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 국가차원의 식량관리체계(식량의 비축·운송·가공·공급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과 식량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의 식량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4	안 제30조(식량안정을 위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량의 공급기관·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음(제1항) 1. 지역별·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 식량공급 및 식량 비축시설의 가동 및 조업 3. 식량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4. 공급기관 상호 간의 식량 교환 또는 분배·사용 5. 식량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6. 식량의 배급 7. 식량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8. 그 밖에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5	안 제31조(양곡의 무상 제공)	정부는 식량안보위기 시 모든 국민에게 식량이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이하 “양곡”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곡의 무상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6	안 제32조(국제 식량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농업 자원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식량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제 식량 기구 및 주요 식량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식량위기 공동 대응에 참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27	안 제33조(통일 대비 식량안보 정책 및 양곡 관리)	국가는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량안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통일 상황에 대비하여 양곡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을 시행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쌀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로 방출하여야 함(제3항)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쌀의 비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제4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의 책무)	—	• 정부가 국내외 식량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7조(식량안보 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8조(식량안보 위원회 설치)	○	• 유사사례 참고 — 식량안보위원회 구성·운영
4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 유사사례 참고 —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0조(기본 계획 등의 추진)	—	• 미대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량안보 시책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6	안 제11조(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	• 미첨부: 제정안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종자산업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푸드테크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의 범위·규모 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의 규모·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2조(농지 보전 및 관리)		
8	안 제13조(농업 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		
9	안 제14조(종자산업 보호 및 육성)		
10	안 제15조(농업 투입재 공급 및 기계화 지원)		
11	안 제16조(농어업경영체 경영 안정 및 육성 지원)		
12	안 제17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13	안 제18조(식량비축시스템 구축 등)		
14	안 제19조(식품산업 지원 및 육성)		
15	안 제20조(식량 증산 시책)		
16	안 제21조(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화 체계 구축)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식량안보 통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식량위기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을 포함한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7	안 제22조(농어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18	안 제23조(식량안보 통계 시스템 구축)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식량안보 통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식량위기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을 포함한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9	안 제25조(식량위기경보 및 대응 체계)		
20	안 제26조(식량안보위기대응기금 조성)	×	• 제3호: 현 시점에서는 식량안보위기 대응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기금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1	안 제27조(식량 안보위기 대책본 부 설립 및 운영)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식량안보위기 대책본부 설립·운영, 식량안보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관리, 국가차원의 식량관리체계 구축 및 모의훈련 실시, 식량안정을 위한 조치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부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인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2	안 제28조(식량 안보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23	안 제29조(식량 관리체계 구축)		
24	안 제30조(식량 안정을 위한 조 치)		
25	안 제31조(양곡 의 무상 제공)	×	제3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무상제공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추계기간 동안의 판매물량, 판매단가를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26	안 제32조(국제 식량 협력 강화)	×	- 제3호: 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공공비축 단가, 물량, 보관 및 방출비용, 해외투자 지원 규모·내용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해외 농업 자원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식량 공급망 안정화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 지원 - 남북한 통일 대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량안보 정책 수립·시행 - 통일 상황 대비 양곡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비축 계획 수립·시행 - 비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쌀을 가공용쌀 등으로 방출 - 통일부장관이 쌀의 비축·방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
27	안 제33조(통일 대비 식량안보 정책 및 양곡 관 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식량안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중 첫해에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기본계획 수립 사례

(단위: 백만원)

유사 기본계획	수립비용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 연구	100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방안 연구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식량안보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100	—	—	—	—	100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식량안보위원회 설치(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조)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식량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규정¹⁾

- 1)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식량안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13명(약 60%)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위촉직 위원(민간위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 1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2개 등 총 3개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본위원회와 유사하게 약 60%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식량안보위원회 심의·조정·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분한 것임

[표 4] 식량안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구분		주요 기능 (안 제8조제2항)		총 인원	민간위원 (약 60% 규모)
식량안보위원회 (본위원회 1개)		아래 1.~12.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23	13
분과 위원회 (3개)	실무위원회 (1개)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3. 식량안보 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식량안보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5
	분야별 전문위 원회 (2개)	정책 신설· 개선	4. 식량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식량안보위기 시 식량관리체계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주요 식량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7. 식량자급률 설정 및 생산기반 안정화에 관한 사항 8. 식량안보 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관한 사항	8	5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10. 식량안보 정책의 이행을 위한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3

주: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본위원회와 동일하게 약 60% 규모로 구성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222쪽)

- 회의개최 횟수는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3개) 각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023~2025년

(단위: 회)

	2023	2024	2025	합계	평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4	4	2	10	3.3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5	6	4	15	5

주: 회의 횟수는 출석회의 및 서면회의를 합산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6.3.)

- 추계 결과, 식량안보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식량안보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명, 회, 만원/명·회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본위원회	민간위원 수(A)	13	13	13	13	13	—
	회의개최 횟수(B)	4	4	4	4	4	—
	사례금 단가(C)	30	30	30	30	30	—
	소계 (D=A×B×C)	15.6	15.6	15.6	15.6	15.6	78
분과위원회(3개) - 실무위원회(1개) - 분야별 전문위원회 (2개)	민간위원 수(E)	13	13	13	13	13	—
	회의개최 횟수(F)	4	4	4	4	4	—
	사례금 단가(G)	30	30	30	30	30	—
	소계 (H=E×F×G)	15.6	15.6	15.6	15.6	15.6	78
합계(I=D+H)		31	31	31	31	31	156

주: 1.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